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
담당 부서	시설안전과	배포일시	2020. 1. 6.(월) / 총 2매(본문 2)	
		담당자	· 과장 김태곤, 사무관 이용재, 주무관 전미자 · ☎ (044) 201-4594, 3588	
보도일시		2020년 1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6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부실점검 근절4차산업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‘내실화’

7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…부실점검 처벌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

-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시설물안전법)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(1.7)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그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하였으나,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다.
 - 또한,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·활용되고 있으나,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였다.
-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(부실점검자 처벌 강화)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

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한다.

-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였으나,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, 불량, 미흡으로 구분하여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하였다.

* (현) 부실 : 1회 1개월, 2회 3개월 →

(개) 매우불량 : 1회 3개월, 2회 6개월, 3회 등록취소 (불량 2회시 매우불량 1회 준용)

- (신기술 하도급 허용)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,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한다.

-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,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,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·고도화될 것을 기대하며,

-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이용재 사무관(☎ 044-201-459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